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3. 28.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12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3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2007. 3. 26),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외국인의 지위(안 제3조) : 공공시설 이용

나. 지원사업(안 제4조) : 시책 추진 및 실태조사

다. 지원대상(안 제5조)

-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외국인 가정

라. 지원의 범위(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
-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마. 자문위원회의 기능(안 제9조)

-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사.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위탁

아. 외국인의 날(안 제16조) : 매년 5월21일

자. 외국인에 대한 포상(안 제17조)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

가. 제정취지 및 경과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실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6. 4월 ‘국내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6. 5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06. 8월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으며
또한, 2006. 10. 31에는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지자체별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타 시도 사례

전라북도가 2007. 3. 2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일정수준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도의 조례안 또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집행부 실무부서의 의견을 가감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 참고자료(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도내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외국인 가정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도지사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안과장, 노동부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장, 법무부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4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의 날) ①도지사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중에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날 및 다문화 주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에 대한 포상)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외국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명예도민) ①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 할 수 있다.

②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〇〇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〇〇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〇〇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〇〇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〇〇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〇〇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〇〇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〇〇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〇〇시의 책무) ① 〇〇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〇〇시장은 〇〇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